

제 호

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서

○ 성명(단체명): 양서경

○ 주소 : 미상

귀하께서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재산(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37-7) 내 아래 시설물(컨테이너 1동 및 울타리)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여 **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하오니 반드시 2026년 9월 6일까지 이행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,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할 것임을 고고합니다.

아울러, 대집행 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용도	면적	대집행 방법
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37-7	컨테이너 1동, 울타리 및 인근 적치물 일체	컨테이너 등 적치	31.6㎡	인력·장비 등을 동원하여 무단점유 지장물 철거 (국가철도공단 또는 제3자 집행)

2026. 8. 14.

국가철도공단 이사장

